##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85

발의연월일: 2024. 10. 18.

발 의 자: 민형배·김문수·이개호

안도걸 • 소병훈 • 주철현

이성윤 • 박홍배 • 정동영

윤준병 · 김용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문화향유 기 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성행합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 매만을 대상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입장권 부정판매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 어집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정판매된 입장권 확인 방법·절차 등 필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올바른 스포츠 경기 문화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

6조의2).

법률 제 호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을 "입장권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정판매된 입장권등의 확인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
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u>「정보통신망 이</u>	② <u>입장권등을</u>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	
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u>&lt;신 설&gt;</u>	③ 부정판매된 입장권등의 확
	<u>인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u>
	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u>으로 정한다.</u>